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7.

발 의 자 : 조경태 · 김태호 · 고동진
안철수 · 한지아 · 신성범
박성훈 · 엄태영 · 박정하
정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·정밀화·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·농촌의 성장·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하자, 장비 결함 및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, 보상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·운영·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신뢰를 확보하여 스마트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 신

설).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) ① 스마트팜(정보통신기술 기반 지능형 농장을 말한다)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·운영·유지·보수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분쟁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, 위원의 제척(除斥)·기피·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분쟁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0조의2(분쟁조정위원회의 설</u> <u>치) ① 스마트팜(정보통신기술</u> <u>기반 지능형 농장을 말한다)</u> <u>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</u> <u>는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·</u> <u>운영·유지·보수와 관련된 대</u> <u>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</u> <u>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</u> <u>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</u> <u>(이하 “분쟁조정위원회”라 한</u> <u>다)를 둔다.</u> <u>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</u> <u>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</u> <u>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농림</u> <u>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</u> <u>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</u> <u>서 호선(互選)한다.</u> <u>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</u> <u>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</u> <u>기, 위원의 제척(除斥)·기피·</u> <u>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</u> <u>성·운영과 분쟁조정 절차 등</u> <u>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</u>

	로 정한다.
--	--------